

문서번호	총무과-23978
결재일자	2015.9.25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★주무관	인사팀장	총무과장	행정관리국장		
백우현	송재훈	박봉주	09/25 김종순		
협조					

밝고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**2015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결과보고**

2015. 9.



성 동 구
 (총 무 과)

밝고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2015년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결과보고

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등 법령에서 정한대로 밝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

I. 추진 근거

-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(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) 제31조 (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)
-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(성희롱 예방교육)
- 성동구 성희롱 예방 지침 (2004. 5. 25. 제정, 2012. 11. 8. 개정)

II. 교육 개요

교육개요

- 대 상: 성동구 전 직원(임기제, 공무원 포함)
- 일 시: 2015. 9. 17.(목) 8:30 ~ 9:30 (1시간) ※ 제3차 정례조례와 연계하여 실시
- 장 소: 구청 3층 대강당
- 교육방법: 전문강사에 의한 대면교육

교육요약

- 성희롱 관련 법령, 사건발생시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, 구제절차,
- 민원인,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대처방안

강사소개



고 남 숙 (패밀리코칭연구소 소장)

-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상담복지과 졸업
- 여성가족부 폭력예방 현장점검 및 컨설턴트
- 창조적 대화기법 Creating Communication Therapy 전문강사 등 다수 자격증 보유
- 2015년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

III. 교육 결과

참석인원: 513명

교육평가

- 성희롱 관련법 제정 취지: 양성평등기본법(2015. 7. 1. 시행)에서 변경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.
- 성희롱 개념, 판단기준: 성희롱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성희롱 판단기준이 본인이 아닌 피해자에 있음을 영상자료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음.
- 성희롱예방 및 대처방법: 성희롱 피해를 받았을 때 대처방법과, 동료 등에 성희롱 사례가 발생시 대처방법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음.

결과사진



- 교육장 전경 -



- 열강하는 고남숙 강사님 -

IV. 후속 조치

교육 미참석자 부서장 교육 실시 전 부서(동)

- 실시: 부서장 책임하에 교육 미참석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
 - 미참석자: 미참석자 현황은 총무과에서 각 부서로 개별 통보
 - 교육자료: 2015년 강의자료 및 여성가족부 동영상 (동영상 필요시 총무과에 요청)
- 결과보고: 붙임 보고 양식으로 공문 시행 후 원본 총무과로 송부

참석자 필수학습 1시간 인정 총 무 과

- 붙임 1. 2015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(PPT) 1매.
2. 부서장 자체교육 실시결과 보고 양식 1부. 끝.